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11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백종헌・박정하・서천호

최보윤 • 박충권 • 진종오

이헌승 • 고동진 • 정희용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 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절차"를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로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이 경우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 입 위생용품 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 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 로 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단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을 "위생용품"으로 본다.

제30조제3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 제3항, 제3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검사) 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위생상 위해가</u>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
	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
	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u>수 있다.</u>
$\underline{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1	<u>③</u>
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	
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검사 결과</u>
	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
	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 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신 설>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
고를 수리할 수 있다.
<u>④</u> 제3항에도
<u>⑤</u> <u>제3항</u>
에 따라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의 종류·대상·방법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자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

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위생용 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 다.

<u>⑦</u> 제3항 및 제4항-----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 화)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 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 위생용품 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 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 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 된 수입신고 수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 제8조제5항 -----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 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신 설>

 _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 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는 「수입식품안전관 리 특별법」 제39조의2를 준용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야 한다.

- 1. · 2. (생략)
- 3. <u>제8조제2항</u>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을 "위
생용품"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제3항</u>